

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12월 18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
박 상 기
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5975호
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

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취득한 후”를 “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제2호다목 중 “검사 2명”을 “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(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검사”를 “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,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,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,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,

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